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56
----------	------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장애인이용시설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책무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상담, 의료재활 등 재활서비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사업, 지역 사회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연계, 조사연구사업 등에 전문적인 지식,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재활서비스 사업 : 재활상담, 의료재활(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
 - 복지관내 각종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가복지봉사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
 -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자원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사업 동참 유도
 -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위치 :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파동)
- 사업규모 : 부지 11,082㎡, 연면적 6,061㎡(4개동, 희망드리작업장 482.35제외)
- 주요시설 : 의료재활관, 직업훈련관, 복지지원센터 등
- 개관 : 1984. 8. 27.

마. 민간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민간위탁적격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1년 예산기준)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2,241,597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고
합 계	2,241,597		
복지관 운영	1,815,734	· 복지관 직원 35명 및 운영비 - 관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 등	
주간보호 운영	166,618	· 주간보호시설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 직원 3명, 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	
기타 운영비	259,245	· 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 장애인가사도우미, 공동생활가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 관련 계획 : 붙임 2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③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붙임 2] 추진계획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대구드림텍의 민간 위수탁 운영기간('17년~'21년, 5년) 만료에 따라 수탁법인을 공모·선정하여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시행규칙(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6조, 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위탁운영)

II 추진방향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행정신뢰도 제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

III 위탁개요

- 기 간 : '22. 1. 1. ~ '26. 12. 31.(5년간)
- 대 상 : ①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②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③대구드림텍
(①~③ 개별적으로 위수탁추진)
- 위탁사무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드리, 대구드림텍 운영전반 및 시설관리,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세부 사업 내역 >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관사업 : 재활서비스,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 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 재활서비스사업 : 재활상담, 의료재활(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
 -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사업 :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발생 예방 등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자원봉사자 교육, 재가장애인봉사 등
 - 복지관부설사업 : 주간보호센터, 체육관운영
-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 중증장애인 생산품, 종이컵생산, 임가공작업
- 대구드림텍 : LED조명, 사출성형, 문서파쇄사업 등

IV 위탁시설

○ 일반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m ²)	개관일	직원현황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성구 파동로 51길 26-17	· 대 지 : 11,082 · 건축면적 : 6,061.11 · 건축부지 : 2,215.97	1984. 8. 27.	35명 (관장 1, 사무국장1, 팀장8, 담당자25)
대구희망드리 보호작업장	수성구 파동로 51길 26-17	· 작업장 : 482.35	2007. 7. 26.	39명 (종사자4, 근로자35)
대구 드림텍	달서구 성서로 68길 42	· 대 지 : 1,761 · 건축면적 : 1,253 · 연 면 적 : 3,716	2011. 10. 26.	70명 (종사자15, 근로자55)

○ 예산지원내역(최근3년간, 백만원)

연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드리	대구드림텍
2021	2,242	296	948
2020	2,201	291	931
2019	2,103	285	895

○ 現 위탁내역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법 인 명 : (사단법인)국제라이온스클럽 356-A지구
- 대 표 자 : 박대형, 시설장(관장) 김대영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 법 인 명 : (사단법인)국제라이온스클럽 356-A지구
- 대 표 자 : 박대형, 시설장(관장) 한남철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대구드림텍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아시아복지재단
- 대 표 자 : 강영신, 시설장(관장) 강기표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V 세부추진사항

추진절차

과 정	내 용	시 기
민간위탁 계획수립	- 민간위탁방침(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드리, 대구드림텍) · 위탁기간 ⇒ '22.1월 ~ '26.12월(5년간)	3~4월
↓		
시의회 동의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시의회 동의(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제출, 조례 별지1작성)	4~6월
↓		
공고	- 공고문작성 및 공보게재 의뢰 재공고 실시(1개법인)	7~8월
↓		
수탁자선정심의위 원회개최	-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결정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9월
↓		
수탁법인 공고	- 수탁법인 공고(3개 기관 각각 수탁법인 공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드리, 대구드림텍	9월
↓		
일상감사 및 법무담당관실	- 위수탁협약서(안) 일상감사 및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 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5조), 법제업무운영규칙(37조)	10월
↓		
위수탁협약체결	- 수탁법인과 위수탁협약서 작성 및 공증	10~11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근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방법 : 시의회 정식안건 제출(임시회)

〈동의안 주요내용〉

- ▣ 위탁사무명
-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민간위탁기간
- ▣ 수탁자 선정방식
-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 고 : 2021. 7~8월중 (15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공고안 : 붙임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팩스 및 우편접수(택배 포함) 불가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
- 응모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이나 분사무소(지부, 지회)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 의무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표별 심사자료(증빙자료 포함)

VI 수탁자선정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사(6~9명)
-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심의기준 : 자체심사지표 활용(붙임3)

구 분	심 사 영 역			총 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배 점	40	30	30	100

- 심사위원별 채점 후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또는 1개법인 적격심사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심사·평가 계획 별도 수립·추진
- 선정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정기일 내 협약체결하며, 불응시 차순위자 선정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VII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승인 : 4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 2021. 7. 12.(월) ~ 7. 26.(월) 09:00 ~ 18:00
 - ▶ 공고문안(붙임1), 위탁운영신청서(붙임2)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평가·심사계획 수립 : 2021. 8월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1. 9월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10월중
 - 위탁결정 통보 등 : 시 홈페이지·공보게재 및 개별통보
 - 위·수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위·수탁 개시 : 2022. 1. 1.
 - ※ 업무추진 일정상 지연될 경우 위탁개시 전까지 사무를 계속하도록 조치